



202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



202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발 행 일	2021년 1월 25일
발 행 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 소	(03088)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1, 2층
대표전화	02-3668-0200
홈페이지	www.kawf.kr
기 획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책기획팀
디 자 인	그래픽오션 02-3422-5612

CONTENTS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재단 소개	6
2021 예술인복지사업 개요	8
예술인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조건	10
예술활동증명	

2021 예술인복지사업 상세 안내

예술인 신문고	16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	22
예술인 심리상담	24
예술인 성폭력피해 지원 및 예방	28
예술인 사회보험료(국민연금) 지원	30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32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창구	36
예술인 의료비 지원	40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44
창작준비금지원 - 창작디딤돌	46
예술인 파견지원 - 예술로	48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	54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56
예술인패스	60
※ 예술활동증명 세부 기준 및 운영 지침	62

0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재단 소개	6
2021 예술인복지사업 개요	8
예술인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조건	10
예술활동증명	



재단 소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2012년도에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심벌마크는

행복한 예술인의 웃는 표정을 의미합니다. 예술인(Artists)과 복지(Welfare)의 머리글자 AW를 형상화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Korean
Artists Welfare
Foundation



Vision 비전

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증진



Mission 미션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 및 복지지원으로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예술발전에 이바지
(예술인 복지법 제1조)



Slogan 슬로건

예술인이 믿고
의지할 수있는 친구

사업 영역



창작역량강화

창작준비금지원
예술인패스



권리보호 및 권익지원

예술인 신문고
계약 및 저작권 교육
법률상담, 심리상담
성폭력피해 신고상담
성폭력 예방지원



사회안전망구축

예술인 고용보험 상담 안내
예술인 국민연금 지원
예술인 산재보험



예술가치확산

예술인 파견지원
예술인 역량강화



생활안정지원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의료비 지원



예술활동증명

사업 개요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자격	공고일
예술인 신문고	•불공정행위와 서면계약 위반 관련 상담·신고·조사· 조정·소송 지원	•예술활동 관련 불공정행위, 서면계약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	상시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	•현업·예비 예술인, 문화예술기획업자를 위한 권익보호 교육 지원	•현업 및 예비 예술인 •예술 관련 협·단체, 예술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및 관련부서 (취업지원팀·학생지원센터 등) •문화예술기획업자, 기타 계약 및 저작권 교육이 필요한 협·단체 및 사업체 등	3월
예술인 심리상담	•[개인 심리상담] 심리검사, 상담 (12회 한도) •[집단 심리상담] 프로그램 참여 비용	•예술창작활동 과정에서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예술인 ※ 종전 개인 심리상담 참여자는 상담 종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규신청 가능 ※ 집단 심리상담은 재단과 사전협의를 통해 신청 가능	3월
예술인 성폭력피해 지원 및 예방	•[피해 지원] 법률상담, 소송지원,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기타 관련기관 연계 •[피해 예방] 성폭력예방교육 지원	•성폭력 피해로 고충을 겪고 있는 예술인 ※ 신고·상담은 예술계에 종사하는 피해자, 대리인 (개인 및 관련 단체 등) 모두 신청 가능 •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한 예술인, 예술단체, 협·단체, 예술대학 등	[피해지원] 상시 [피해예방] 3월
예술인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지원	•국민연금 보험료의 40~80% 지원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서면계약을 체결하거나 표준계약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예술인과 서면계약을 체결한 문화예술사업자	2월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가입 및 보험 사무대행 •납부보험료 50~90% 환급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재단을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	상시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창구	•온·오프라인 제도 안내 •찾아가는 설명회 운영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는 예술인	상시
예술인 의료비 지원	•1인 최대 300만원 지원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예술인	2월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예술인 자녀 대상 돌봄 지원센터 2개소 운영	•이용: 예술인 자녀(24개월~10세) •운영: 화요일~일요일(요일 운영시간 상이, 사전확인 필요) •요금: 시간당 500원 •위치: 대학로 소재(반디돌봄센터) 망원동 소재(예술인자녀돌봄센터)	상시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자격	공고일
창작준비금 지원 -창작디딤돌	•1인당 연 300만원 지원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본인 및 배우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예술인 •당해연도 실업급여 미수급 예술인 ※ 참여제한 - 2020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 - 창작디딤돌 수혜자 - 2021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 - 예술로 참여 예술인	(1차) 2월 (2차) 6월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1인당 200만원 지원 (생애 1회)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특례 완료 예술인	하반기 중 (예정)
예술인 파견지원 - 예술로	•[리더예술인] - 예술로 협업사업 총 910만원 (6.5개월) - 예술로 기획사업 총 840만원 (6개월)	•[예술로 협업/기획사업 -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 참여제한 - 재단사업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예술인 - 2021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디딤돌 수혜자	
예술인 지역지원 - 예술로	•[참여예술인] - 예술로 협업 /기획사업 총 720만원 (6개월)	•[예술로 협업/기획사업 - 기업·기관(마을)] - 예술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예술을 통한 이슈해결 및 혁신하고자 하는 기업·기관(마을)	2~3월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	•[지역문화재단] - 운영규모별 예술인 활동비 및 사업운영비 지원	•[예술로 지역사업] - 공모를 통해 광역문화재단 선정(10개 내외)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광역문화재단 제외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	•온라인 교육 및 실습 지원 - 1인당 연 50만원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특례 완료 예술인	5~6월
예술인 생활안정 자금용자	•생활안정자금대출 (최대 700만원) •코로나19 특별용자 •전세자금대출 (최대 1억원)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유효기간 3개월 이상)	정기

※ 상시 사업의 경우, 예산 소진 시 신청이 마감됩니다.
※ 보다 정확한 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술활동증명

예술인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조건



예술활동 증명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예술인복지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해야 합니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예술활동증명 세부 기준 및 지침: 62p 참고)

신청자격

- 11개 예술분야(문학·미술·사진·건축·음악·국악·무용·연극·영화·연예·만화)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로 예술활동을 하는 직업 예술인
 - 최근 일정 기간의 ①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혹은 ② 예술활동으로 얻은 수입을 증명할 수 있거나, ③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에 준하는 예술활동을 펼쳐왔음을 증명한 예술인
- ※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6조

진행 절차

- 예술활동증명 진행 절차

예술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기준 확인	>	자료 준비	>	신청 (온라인)	>	행정 심의	>	심의위원회 심의	>	결과 공지

- ※ 신청인이 선택한 예술분야의 심의위원이 신청서 및 첨부자료를 검토하오니,
예술분야를 신중히 선택해주시요.
- 심의위원회 운영
 - 문학, 미술 (일반, 디자인·공예, 전통미술), 사진, 건축, 무용, 음악 (일반, 대중음악), 국악, 연극, 영화, 연예 (방송, 공연), 만화 총 11개 분야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심의 진행
 - 심의위원회 결과: 심의완료 후 문자 및 이메일로 개별 결과 통보

제출서류 및 자료

-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분야 및 기준별 자료 제출
 - ①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 공연 포스터, 리플릿, 도서, 앨범, 계약서 등 공개 발표된 실적 자료 (참여예술인 이름(예명확인자료필첨)·역할·제목·일시·장소·주최사 등이 확인 가능한 자료)
 - ※ 예술분야별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기준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확인 (별첨 참조)
 - ② 예술활동 수입
 - 최근 1년 동안 예술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120만원 이상 혹은 3년 동안 360만원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거래내역 확인 자료 그리고 예술활동으로 인한 수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계약서, 공연 포스터, 리플릿 등)

예술활동 증명

- ③ 기준 외 활동 경우
- 원로예술인(만 70세 이상)은 그동안의 경력 자료 (언론보도 내용, 공적, 기타 문화예술 관련 공인된 활동 등)
 - 경력단절예술인은 질병, 육아, 임신, 출산, 가족 돌봄, 군대 등 경력단절에 대한 증빙자료 및 경력 단절 이전 활동에 대한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자료
 - ※ 예술활동이 ①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② 예술활동 수입 기준에 맞지 않지만 예술활동증명 절차 완료를 원하는 경우 기준 외 활동으로 신청가능하며, 신청 내용을 심의위원회에서 검토 후 결정
- ④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산재보험 가입, 불공정행위(구. 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
- ※ 해당 예술활동 관련 서면계약서 사본 첨부 필수

신청방법 및 결과안내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신청방법: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회원가입 필요)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
(www.kawf.kr) > 예술활동증명 > 신청방법 및 자료 안내

- 결과안내: 문자 및 이메일 개별 안내

문의

예술인지원팀 02-3668-0200, www.kawf.kr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

《2021년, 예술활동증명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21년 3월 시행 예정

- ①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특례 제도 도입 ※ 자세한 기준 및 내용은 추후 공고
- 신진예술인의 예술계 안착과 복지지원을 위한 특례 제도 신설
 - ‘신진예술인’이란 - 1. 최초 전문적인 예술활동 실적 이후 2년 미만의 활동 기간을 갖고 2.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여 완료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
- ② 온라인 예술활동 실적 인정 기준 마련
-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예술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온라인 예술활동을 예술활동증명 실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 마련
- ③ 무형문화재 특례 제도 확대
-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교육사로 예술활동증명 특례 확대



예술활동증명, 이렇게 활용하세요!

1.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시, 재직증명서로 활용

예술인 자녀(0세-5세)의 어린이집 입소시, 예술활동증명서가 재직증명서를 대체합니다. 부모 취업여부 확인용 서류로 인정되어 우선입소 대상, 종일반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행복주택 신청자격으로 활용

정부의 행복주택 신청자격에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예술인패스로 다양한 혜택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은 신청시 모두 예술인패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패스 발급받아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공연료 할인을 비롯한 다양한 혜택을 누리세요!

02

사업 상세 안내

예술인 신문고	16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	22
예술인 심리상담	24
예술인 성폭력피해 지원 및 예방	28
예술인 사회보험료(국민연금) 지원	30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32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창구	36
예술인 의료비 지원	40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44
창작준비금지원 - 창작디딤돌	46
예술인 파견지원 - 예술로	48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	54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56
예술인패스	60
※ 예술활동증명 세부 기준 및 운영 지침	62



예술인 신문고

I 불공정행위 신고·상담

예술활동 시 발생하는 불법 행위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여 예술인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 마련한 불공정행위 및 서면계약 위반 관련 고충처리 종합지원시스템(One-stop System)입니다.

지원대상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중 예술활동과 관련한 불공정행위(「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 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에 따른 불공정행위)로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피해 구제, 분쟁 조정 및 소송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예술인의 경우, ‘불공정행위 신고를 위한 예술활동증명 특례’ 신청(관련 서면계약서 제출)을 통해 빠르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불공정 행위에 대한 원스톱 지원(상담, 신고, 소송지원 등)
- 신고인이 소송을 통해 민·형사구제를 받고자 할 경우 소송비용 지원(심급 당 민사 200만원, 형사 100만원)

* 불공정행위란?

1.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2.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관련법: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
시행령 제3조의2(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원절차

예술인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공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신고	> 사실관계확인	> 사실조사	> 시정조치 등 사건 처리 자문, 분쟁조정	>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 소송지원

* 신고사건 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I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지원대상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중 예술활동과 관련하여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서면계약위반 행위(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구제, 분쟁조정, 법률 상담 등을 필요로 하는 자

지원내용

-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작성 위반에 대한 검토 및 조치
-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작성 확대를 위한 전자계약 체결 서비스 제공

서면계약 위반 유형

1.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서면계약서 미작성에 해당
2. 계약서 명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았을 시 서면계약서 내용미비에 해당
3.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서면계약서를 예술인에게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서면계약서 미교부에 해당
4.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지 않았을 시 서면계약서 미보존에 해당

* 서면계약 체결 시 계약서 명시사항

1. 계약 금액
2.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업무·과업의 내용
5.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6.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 관련법: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제5조의2(계약서의 보존)

진행절차

예술인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공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상담·안내	사실관계 조사	자문기구	시정조치
신고	> (필요 시) 신고 접수	> 서면계약 위반 사항 조사	> (필요 시) 시정조치 자문	> 서면계약 위반 시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법 위반 행위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I 법률
상담·컨설팅

지원대상

- 문화예술기획업자 등과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예술인
- 예술활동 계약 관련 법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

지원내용

- 예술계 특화 전문 컨설턴트 상담 제공(계약, 저작권, 기타 예술용역 계약 관련 분쟁 등)
- 서면계약서 검토 및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등 법률상담 지원
- 불공정 행위 및 서면계약 위반에 해당할 경우, 예술인 신문고 연계 지원

진행절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법률 컨설턴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상담요청자(예술인 등)
불공정행위 및 서면계약 관련 상담접수	> 상담 진행 (내용에 따라 대면상담 진행)	상담요청자에 > 답변전달 및 대면상담 예약 진행 (필요 시 불공정행위 및 서면계약 위반 신고접수)	> 답변수령 (필요 시) 대면상담 연계

I 신고
및 상담방법

신청방법

계약/ 불공정행위 상담	• 온라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알림·상담-아래의 각 메뉴 - 법률상담: 알림·상담→‘상담·컨설팅’ 메뉴 - 서면계약 상담: 알림·상담→예술인신문고→‘서면계약 상담’ 메뉴 - 불공정행위 상담: 알림·상담→예술인신문고→‘사전상담’ 메뉴 • 이메일: sinmungo@kawf.kr • 전 화: 02-3668-0200(방문 상담 시 사전예약 필수)
불공정행위 신고	• 온라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알림·상담→예술인신문고→‘신고하기’ 메뉴 • 전 화: 장르별 신고처(15개) ※ 일부 기관 온라인 신청 가능 • 방 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
서면계약 위반 신고	• 온라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알림·상담→예술인신문고→‘서면계약 위반신고’ 메뉴 • 이메일: sinmungo@kawf.kr • 방 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

문의

권리보장팀 02-3668-0200, www.kawf.kr

I 신고
접수기관

장르	신고처	신고 및 문의	비고
모든 장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	www.kawf.kr 02-3668-0200	
방송 기술	실연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www.kbau.co.kr 02-784-3411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www.hanbit.center 1833-8261	
		한국독립PD협회 www.indiepd.org 02-3219-6493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 02-364-6500	
창작	방송작가유니온	www.writersunion.kr 02-6956-0050	
	대한가수협회	www.singer.or.kr 02-780-2783	각 기관 신고 후,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사실조사 및 소송지원
대중음악	뮤지션유니온	www.musicianunion.kr 070-8162-0908	
	한국연극협회	www.ktheater.or.kr 02-744-8045	
	서울연극협회	www.stheater.or.kr 02-765-7500	
뮤지컬	한국뮤지컬협회	www.kmusical.kr 02-765-5598	
만화	한국만화가협회	www.cartoon.or.kr 02-757-8485	
무용	한국무용협회	www.koreadanceassociation.org 02-744-8066	
	전문무용수지원센터	www.dcdcenter.or.kr 070-4219-4918	
영화	영화인신문고	www.sinmungo.kr 02-2272-1505	영화인신문고 자체 지원
문학	한국작가회의	www.hanjak.or.kr 02-313-1486	

I 유관기관

분야	기관명	신고 및 문의	내용
영화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	www.kofic.or.kr 1855-0511	한국영화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신고 및 제보, 법률지원 등
콘텐츠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불공정행위신고	www.kocca.kr 070-5167-3500	문화산업 관련법령에 따른 불공정행위 신고 및 법률지원 등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 02-2669-0042(조정), 1800-5455 (②번. 문화예술인 전문상담)	저작권 침해 관련 분쟁 조정 및 상담
미술 (공예·디자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www.kcdf.or.kr 02-398-7900	공예문화와 디자인 문화 확산 지원 등

I 지원절차

업무내용	처리 기관	내용
상담컨설팅 불공정행위상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 중 계약, 저작권, 불공정행위 관련 전문 컨설턴트의 상담 지원(온라인 및 대면 상담)
▽		
신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방문, 온라인 신고 상담 •재단 홈페이지 및 전화(02-3668-0200)
▽		
사실조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신고내용 확인, 기초 사실관계 조사, 자료 요구 •문화체육관광부 조사담당관이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구 등 사실조사 실시 •자료제출 요구 미이행 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400만원 부과)
▽		※ (필요시) ‘문화예술공정위원회’ 상정을 통해 자문
자문	문화예술공정위원회	•조사보고서 검토 후 의견 제시, 필요 시 분쟁 조정
▽		
시정명령	문화체육관광부	•불공정행위 신고 - 피신고인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시정조치 명령 ※ 시정명령 내용: 불공정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 변경, 사실의 공표, 기타 필요한 조치 등 ※ 1호(불공정한 계약 등 강요 행위) 사건 중 「공정거래법」적용 대상일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이첩 -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최대 500만원) •서면계약 신고 - 서면계약서 미작성 등 법 위반시 시정조치 명령 - 서면계약 미작성 및 미보존,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최대 500만원)
▽		
소송지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불공정행위 피해 예술인(신고인)이 소송을 통해 민·형사구제를 받고자 할 경우 지원의 실효성 등 검토 후 소송비용 지원 (심급당 1인당 최대 민사 200만원, 형사 100만원)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이하인 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원 •기준 중위소득 125% 이상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이상인 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지원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

예술인의 서면계약 및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실무 대응능력을 높여 예술인 스스로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예술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 보급을 통해 공정한 예술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신청자격

- 현업 및 예비 예술인
- 예술관련 협·단체, 예술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및 관련부서(취업지원팀·학생지원센터 등)
- 문화예술기획업자, 기타 계약 및 저작권 교육이 필요한 협·단체 및 사업체 등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1) 예술인을 위한 계약 및 저작권 특강

-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전문기관과 공동개최
- 신청기간 및 방법: 주최 기관과 협의 후 재단 누리집에 공지

2) 찾아가는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

- 주제: 계약 및 저작권, 노동인권 및 노동법, 세무
- 강사: 법률전문가(변호사, 노무사), 저작권 전문가, 현장 전문가, 재단 직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 강사
- 강의시간: 1회, 2시간(신청기관과 협의하여 조정가능)
- 지원내용: 교육 운영 지원(대면, 비대면 가능)*, 전문 강사 파견 및 강사로 지원, 학습 자료 제공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온라인 화상 강의 제공 가능
- 신청기간: 사업공고일~2021년 11월 30일까지 ※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재단 누리집 신청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신청서(부서책임자 날인) 작성 후 이메일 제출(contract@kawf.kr)
※ 신청기관의 강의 요구 사항 등에 따라 내용 및 방식 조정 가능
※ 신청기관 또는 수강생 등이 원하는 경우, 예술인신문고, 법률상담·컨설팅 등 연계 가능

3) <예술인 권익보호의 이해> 온라인 교육

- 교육내용: 저작물과 저작권, 저작권의 내용 및 행사, 저작권 침해와 저작재산권 제한, 문화예술 계약, 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시 대응방안(총 5차시, 강의시간 각 30분)
※ 5차시 모두 수강 후 설문조사 완료 시, 수료증 출력 가능
- 수강신청 방법: 온라인 교육 누리집(kawfartist.khcu.ac.kr) 회원가입 후 신청(무료)

문의

권리보장팀 02-3668-0200, www.kawf.kr

표준계약서 보급 현황

•보급 중인 분야별 표준계약서 현황

분야	표준계약서
미술 (11종)	작가와 화랑 간의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전속계약서(매니지먼트 계약서), 작가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소장자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매수인과 화랑 등 간의 매매계약서, 매수인과 작가 간의 매매계약서, 작가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계약서, 독립 전시기획자와 미술관 간의 전시기획계약서, 대관계약서, 작가와 모델 간의 모델계약서,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영화 (9종)	표준 상영계약서(2종), 표준 시나리오계약서(4종), 표준근로계약서(2종), 영화투자표준계약서
대중문화 (6종)	대중문화예술인(가수·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 계약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공연예술 (4종)	공연예술 표준계약서(창작, 출연),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표준계약서(근로, 용역)
만화 (6종)	출판계약서, 전자책(e-Book) 발행계약서, 웹툰 연재계약서,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저작권재산권 위임계약서), 공동 저작 계약서, 기획만화계약서
애니 메이션 (4종)	애니메이션 방영권 표준계약서, 애니메이션 제작 투자 표준계약서,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개발 표준계약서, 애니메이션 음악 개발 표준계약서
출판 (7종)	단순 출판허락 계약서, 독점 출판허락 계약서, 출판권 설정계약서,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서(해외용)
저작권 (4종)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저작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저작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저작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방송 (6종)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계약서(표준근로·하도급·업무위탁),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www.kawf.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예술인 심리상담

예술창작활동 중 예술인의 다양한 스트레스 해소 및 마음 건강을 위해 심리상담 전문기관 및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한 맞춤형 심리상담을 제공하여 창작의욕을 높이고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자격

- 개인 심리상담: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중 예술창작활동 과정에서 심리적·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자
 - ※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예술인에 한함
 - ※ 기존 개인심리상담 참여자는 상담종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규 신청 가능
- 집단 심리상담: 예술창작에 함께 참여하는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작품분석, 작품창작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심리적 부담에 대한 정서적 안정, 심리적 협업 향상 등 지원
 - ※ 집단 심리상담은 재단과 사전 협의를 통해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예술인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비용지원
 - 개인 심리상담: 최대 12회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지원
(전국 35개 예술인심리상담 지정센터에서 진행)
 - ※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에 한해 비대면 심리상담 6회까지 지원
 - : 담당 심리상담 전문가와 협의하여 진행
 - ※ 상담비용 외 교통비 등 개인 비용은 지원하지 않으며, 지정기관으로 지급
 - 집단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내용 참조

지원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심리검사	• 진단용 설문지 검사	• 성격 및 정서 검사	• 심화종합심리검사 등
개인 심리상담	• 예술활동 및 직업문제 • 대인관계, 부부·가족문제 • 경제문제	• 심리건강(성격문제 및 우울, 불안, 강박 등) • 생애위기사건(사별, 이혼, 퇴직, 건강문제 등) • 자기이해 및 자아성장 등	
집단 심리상담	• 스트레스 대처훈련 •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 우울·불안·사회공포증 등 프로그램 • 부부·가족상담 프로그램 등 • 자기이해 및 자아성장 프로그램	
예방 및 위기개입	• 위기개입 상담 (자살위험, 성폭력 문제 등)	• 사후관리 집단상담 (스트레스 관리 등)	• 자살예방 교육 등 (생명지킴이 교육)

지원절차

개인 심리상담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접수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	>	일정 협의 및 예약 (지정 센터)	>	맞춤형 1:1 심리상담 프로그램 진행	>	만족도 설문 진행
집단 심리상담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의·이메일 접수	>	재단과 일정 및 프로그램 내용 협의	>	맞춤형 집단 심리상담 프로그램 진행	>	만족도 설문 진행

신청방법

- 지원기간: 연중 상시
- 신청기간: 사업공고일~2021년 11월 30일까지 ※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개인 심리상담: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알림·상담-예술인 심리상담-심리상담 신청
(개인정보수집, 심리상담 참여동의서 내용 숙지 및 동의 필수)
 - 집단 심리상담: 이메일(counseling@kawf.kr)로 신청서 접수
-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참여동의서, 사전질문지

문의

권리보장팀 02-3668-0200, www.kawf.kr

예술인
심리상담

2021년 예술인 심리상담 지정기관

권역	기관명	전문가	주소	전화번호
수도권	광화문마음공간심리상담센터	김현미 박윤아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4, 경희궁의 아침3단지 오피스텔 211호	02-720-7127
	그랑조행복찾기심리상담센터 (http://happycenter7.com)	조현섭	서울 서초구 잠원로 8길 25 래미안팰리스상가 4층	010-6335-0391
	다움심리상담센터 (www.daumcc.com)	이은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16 대정프라자 603호	02-2672-1377
	마음산책심리상담센터 (www.mesc.co.kr)	조성민	서울 중구 퇴계로32길 22 1층	02-821-5953
	새봄심리상담연구소 (newspring2017.com)	신영주	서울 마포구 독막로295 삼부골든타워 1006호	010-3565-7294
	세인임상심리연구소 (www.seinpsy.com)	이기련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284 현대레이크빌 306호	02-6287-1275
	심리상담소 턴 (https://blog.naver.com/masterturn)	김수진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721 리버뷰오피스텔 1007호	02-512-2680
	심리상담연구소 함께 (https://blog.naver.com/with_urlife)	윤 영 박희경	서울 금천구 두산로70 현대지식산업센터 A동 408호	02-2104-6833
	이수심리상담센터 (www.esupsy.co.kr)	전진수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3-4, 17층B 디오슈페리움 오피스텔 1706호	02-523-5283
	이화심리상담센터 (www.ewhachild.co.kr)	전현민	서울 도봉구 노해로65길 17 중앙빌딩 4층 402호	02-999-5232
수도권	임선영 심리상담연구소 (www.limcounseling.com/)	임선영	서울 양천구 목동로293 현대41타워 2907호	02-6671-9090
	심리상담센터 마음안아주기	이혜정	서울 종로구 경운동89-4 운현궁sk허브 101동 827호	010-2765-2512
	경인심리건강센터 (cbpsy.cafe24.com)	이봉건	경기 부천시 중동로248번길 52 네 이버시티빌딩 201-1호	032-321-2841
	심리상담연구소 사람과사람 (http://encourageyou.modoo.at)	윤수연	경기 과천시 중앙로137, 4층 404호	02-3418-0502
	로템심리학습상담센터 (http://rodemplc.modoo.at)	오현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5번길 38-10 우림로데오스위트 514, 515호	031-904-4569
	세움심리상담센터 (http://seummind.modoo.at)	강은영	경기 수원시 영통구 권선로 887번길 43-33, 301호	031-202-3812
	심리상담센터 폭신폭신 (pogsinpogsin.modoo.at)	조혜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56 서현프라자 506호	031-915-1456
	심리상담소 여지 (blog.naver.com/mindinspace)	예미숙	경기 파주시 와석순환로515번길 61 송림메디컬프라자 8층 810호	010-8312-3714
	심리클리닉 아이진 (www.izin.co.kr)	김진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6-4 삼라마이더스빌 505호	010-4667-2327
	이든샘가족아동청소년상담소 (www.안양심리상담.kr)	손혜련 이소연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평촌아크로타워 A동 1211호	031-478-9958

권역	기관명	전문가	주소	전화번호
강원권	파크심리상담센터 (blog.naver.com/hbs8286)	박상미 유 미	경기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17 중앙노블레스 6층	031-405-8255
	나무술심리상담센터 (namusoul.modoo.at)	정현옥	인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102번길 8, 우성메디피아 709호	032-576-0030
	지우심리상담센터 (www.wisefriend.co.kr)	성태훈	강원 원주시 서원대로380 노빌리티타워 301호	033-744-1579
	심리상담센터 아낌	신정원	강원 춘천시 거두택지길8. 2층	033-263-1155
	춘천임상심리연구소	김은희	강원 춘천시 스포츠타운길528-12 솔3호	033-255-1533
충청권	그로잉마인드심리상담센터 (growingmind.modoo.at)	최윤경	세종시 새롬남로8, 111동 304호 (새뜸마음 1단지)	010-8410-9520
	손애리심리연구소	손애리	대전 서구 둔산로133 현대아이텔 418호	010-4174-0060
	학습&마음심리상담센터 (학습과마음.kr)	이철희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3길 3 202호	041-558-3837
	휴심리상담소 (http://cafe.naver.com/sooknam)	고속남	충북 청주시 서원구 두꺼비로 20번길 72 203호	043-288-7057
	마음그루심리상담센터 (https://blog.naver.com/mgpcc614)	최이순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2008 예일빌딩 504호	010-5560-2632
경상권	새미래심리건강연구소 (www.smphc.org)	최정민	대구 달성구 용산로141 그랜드M타워 1306호	053-657-6571
	행복생활심리상담센터 (goodlives-psychology.kr)	이태준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440길 7, 4층	053-655-8357
	사단법인 심리건강연구소 (www.cnupsy.org)	김석웅	광주 동구 남문로 758 2층	062-512-0039
전라권	최영미마음상담센터 (www.happychoi.or.kr)	최영미	광주 북구 동문대로111 이상클리닉빌딩 4층	062-263-7942
	내마음의펍권 심리상담센터 (www.pgofmind.com)	김현정	제주시 연화중길12-9 301호	070-4213-8080

※ 심리상담 지정기관은 각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성폭력피해 지원 및 예방

I 성폭력피해 지원

예술계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예술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 및 피해회복을 지원합니다. 더불어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평등한 예술창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방교육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성폭력 피해로 고충을 겪고 있는 예술인, 성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한 예술단체, 협·단체 등

지원내용

구분	프로그램
법률지원	• 전문 컨설턴트 변호사 연계 성폭력 피해 관련 법률상담 • 성폭력피해 관련 민·형사 소송비용
심리상담 지원	• 성폭력 피해 예술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의료지원	•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 (지원여부 결정 후 해당 의료기관으로 통보, 비용은 의료기관에 직접 지원)
관련 전문기관 연계	•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해바라기센터 등 유관기관 안내

진행절차

성폭력피해 신고접수 (전화·온라인·방문)	>	성폭력피해 상담지원 • 전화: 즉시 • 온라인: 7일 이내 회신 • 방문: 예약제	>	내부 회의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지원 검토	>	법률 지원 심리상담 지원 의료 지원 관련기관 연계	>	종료
------------------------------	---	--	---	--------------------------------	---	--------------------------------------	---	----

상담·신고방법

- 전화: 02-3668-0266/02-1670-5678(내선3번)
※ 상담시간: 평일 10시-17시(휴게시간 12시-13시)
- 온라인: 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 알림·상담 → 성폭력피해 상담 신청
- 이메일: withu@kawf.kr
- 방문: 사전 전화예약을 통해 진행(전용 상담공간에서 전문 상담사와 진행)

I 성폭력피해 예방

예술인 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 교육

- 지원대상: 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한 예술인, 예술단체, 협·단체, 예술대학 등
 - 진행절차: 특강을 원하는 협·단체, 대학, 기관 등에서 재단에 신청(협의 후 공동개최)
 - 강사: 문화예술계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전문 강사, 법률전문가(변호사, 노무사) 등
 - 강의시간: 1회, 2시간(신청기관과 협의하여 조정가능)
- ※ 신청기관 및 실제 요구에 따라 강의 내용 및 형식은 다양하게 진행하되, 문화예술계의 특성에 따른 성폭력 문제 발생 원인과 예방에 대한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특강신청 대학, 협·단체, 기관 등
• 전문강사 섭외 • 강사로 및 교재 지원	• 특강 장소 및 기자재 제공 • 모집 및 홍보

신청방법

- 재단 누리집 신청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신청서(부서책임자 날인) 작성 후 이메일 제출(withu@kawf.kr)
- 신청기간: 사업공고일~2021년 11월 30일까지
※ 단,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문의

권리보장팀 02-3668-0200, www.kawf.kr

예술인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지원

문화예술단체(사업자)와 예술인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하여 예술직업군의 사회 보험 편입, 유지에 기여하고 중장기적인 복지처우를 개선합니다. 또한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사용 및 보급을 활성화하여 공정한 계약체결 문화를 정립해 나갑니다.

신청자격

-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 표준계약서(서면계약)를 사용하여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하거나 표준계약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
- 문화예술사업자
 - 표준계약서(서면계약)를 사용하여 예술인과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한 예술단체 및 회사
 - ※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업무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 표준계약(서면계약) 체결 예술인의 경우, 예술활동증명 신청 시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특례’를 선택하고 관련 서면계약서 자료를 첨부하면 한시적으로 예술활동증명을 빠르게 마칠 수 있음

지원내용

- 예술활동에 대한 표준계약(서면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여부 확인 시 해당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40~50% 지원
- 예술활동에 대한 표준계약(서면계약) 체결 후 코로나19 피해 확인 시 해당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 프리랜서 예술인이 재단의 <표준계약 교육> 이수 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지원 (최대 3개월)

지원범위

- 2020년 7월~2021년 6월 보험료 부과분 (전년도 3/4분기~당해년도 2/4분기 보험료 부과분)

지원절차

신청 접수 (개인: 온라인 접수, > 단체: 이메일 접수)	표준계약체결여부 > 또는 표준계약교육 이수여부 등 선정심의	보험 > 납부내역 확인	지원대상 > 여부 결과공지	(분기별) > 지원금 지급
--	--	--------------------	----------------------	-------------------

※ 신청 접수 이후 심의 및 지원까지 약 3개월 소요

제출서류

※표준계약 수강방법: 온라인 교육 누리집(kawfartist.khcu.ac.kr) 회원가입 후 신청(무료)

제출서류	예술인(개인) 신청		단체(회사) 신청 (사업장가입자)
	프리랜서 예술인 (지역·임의가입자)	근로자인 예술인 (사업장가입자)	
신청서	• 신청서 및 동의서(단체신청시 근로자인 예술인 개별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		
계약(교육) 확인서류	• 표준계약서(서면계약) 및 계약이행 확인자료 (입금내역 등) • 표준계약 교육 수료증(* 해당자)		• 표준계약서(서면계약) • 월별 급여명세서
코로나19 피해 확인서류 (*해당자)	• 코로나19 피해 사실확인서 • 코로나19 피해 사실 증빙서류 (의사 진단서, 격리통지서, 계약서 등 코로나19로 인한 예술활동 피해 증명 가능 서류 등)		
국민연금 납부서류	미제출 (※ 재단에서 국민연금공단 통해 납부내역 확인)		• 월별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보험료 환급용 서류	• 통장사본		• 통장사본(회사, 예술인) 및 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

- 접수기간: 공고일(2월 예정)~2021년 8월 31일(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접수방법 - 개인신청: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을 통한 온라인 제출
 - 단체신청: 이메일(support@kawf.kr)

문의

사회보험팀 02-3668-0200, www.kawf.kr

[별첨] 사회보험료 지원금 상한액 (예술인 1인, 1개월 지원 기준)			
구분	프리랜서 예술인	근로자인 예술인	문화예술사업자
	국민연금		
표준계약 체결 시	월 45,000원	월 32,800원	월 32,800원
표준계약 체결 후 코로나19 피해 시	월 90,000원	월 65,600원	월 65,600원
표준계약 교육 이수 시	월 45,000원	미해당	미해당
지원금 상한액 기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1,000,000원 기준 납부 보험료 50% 또는 80% 지원	‘21년 최저임금 월 1,822,480원 기준 납부보험료 40% 또는 80% 지원	

※ 지원금 상한액 기준 - 프리랜서 예술인: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과 동일 기준
- 근로자인 예술인 및 문화예술사업자: 기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과 유사 기준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직업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중소기업사업주 방식으로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산재보험 가입 등 보험사무를 대행하고 보험료 전액을 본인 이 부담해야 하는 예술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납부보험료의 50~90%를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자격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 ※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는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특례’와 산재보험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음

지원내용

- 산재보험 사무대행: 가입 상담 및 가입 대행, 정보 변경 등
- 보험료 지원
 - 등급별 납부 보험료 50% 지원
 - 신규가입자 납부 보험료 90% 지원 (1등급 선택 시 6개월 간 90% 지원)
- 산재청구 상담·컨설팅: 산재 발생 시 보상청구 상담·컨설팅 지원
- 월 보험료 및 지원 금액
(실제 받는 보수와 관계없이 가입자가 원하는 등급을 자유롭게 선택 가능)

등급 (2021)	월 보험료(원)		재단 지원금(원)		기준 보수액
	창작, 실연 등 (7.0/1000)	사업서비스업* (9.0/1000)	창작, 실연 등 (7.0/1000)	사업서비스업 (9.0/1000)	
1등급	14,640	18,830	13,170	16,940	2,092,800
			(90% 지원 시)	(90% 지원 시)	
			7,320	9,410	
			(50% 지원 시)	(50% 지원 시)	
2등급	17,630	22,670	8,810	11,330	2,519,430
3등급	20,620	26,510	10,310	13,250	2,946,060
4등급	23,600	30,350	11,800	15,170	3,372,690
5등급	26,590	34,190	13,290	17,090	3,799,320
6등급	29,580	38,030	14,790	19,010	4,225,950
7등급	32,560	41,870	16,280	20,930	4,652,580
8등급	35,550	45,710	17,770	22,850	5,079,210
9등급	38,540	49,550	19,270	24,770	5,505,840
10등급	41,520	53,390	20,760	26,690	5,932,470
11등급	44,510	57,230	22,250	28,610	6,359,100
12등급	47,500	61,070	23,750	30,530	6,785,730

*보험료율은 가입 시 작성한 업무 내용을 확인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합니다.

지원절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한 보험 가입 신청 (재단을 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가입)
 - 온라인 가입 신청 (예술인 산재보험 누리집 wci.kawf.kr)
- 추진절차 및 내용

예술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 증명 및 보험 가입신청	>	가입 신청 서류확인	>	근로복지 공단 가입접수 대행	>	제출 서류 및 업무내용 확인 후 공단 가입승인	>	승인내역 통보	>	납부보험료 지원 및 사무 대행 업무 수행

※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의 경우, 예술활동증명 신청과 산재보험 가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음(‘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특례’ 선택 후 예술활동 계약서 또는 확인자료 첨부, 약 1주 소요)
※ 근로복지공단으로 바로 가입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재단의 각종 사무대행업무 및 보험료 미지원

유의사항

-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등급)은 매년 1월 말까지만 변경 가능하고 연도 중에는 변경이 불가 합니다.
- 보험가입을 신청한 당해 연도에는 보험계약 해지가 불가합니다.
- 산재보험 제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보험사무대행 및 납부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연중 상시
- 신청방법: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 복지지원 → 산재보험 또는 예술인 산재보험 누리집(wci.kawf.kr) → 가입신청
- 제출서류: 통장사본(보험료 환급용)

문의

- 사회보험팀 02-3668-0200, wci.kawf.kr
- 근로복지공단(제도운영, 산재청구) 1588-0075
- 건강보험공단(보험료 수납, 자동이체) 1577-1000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별첨 1] 보험료 산정 및 납부

월 보험료 = 월 보수액 × 보험료율					
• 월 보수액(2021년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등급	보수액(월)	평균임금(일)	등급	보수액(월)	평균임금(일)
1등급	2,092,800	69,760	7등급	4,652,580	155,086
2등급	2,519,430	83,981	8등급	5,079,210	169,307
3등급	2,946,060	98,202	9등급	5,505,840	183,528
4등급	3,372,690	112,423	10등급	5,932,470	197,749
5등급	3,799,320	126,644	11등급	6,359,100	211,970
6등급	4,225,950	140,865	12등급	6,785,730	226,191

- 산재보험료율(출퇴근 재해 요율 1.0/1000 포함)
 - 7.0/1,000: 실연, 창작, 기술지원 예술인
 - 9.0/1,000: 사업서비스업* 예술인

*공연 대리인, 큐레이터 등 업무 내용을 확인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
- 월 보험료(예시)
 - 1등급의 경우 : 2,092,800원 × 7.0/1,000 = 14,640원
 - 12등급의 경우 : 6,785,730원 × 7.0/1,000 = 47,500원

* 1개월 기준 금액이며 월 중에 가입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되어 청구됨

[별첨2] 산재보험 주요 혜택

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에 따른 치료비 상당액 지급
휴업급여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요양 기간 중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 지급
장해급여	치료 후에도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을 경우 지급
간병급여	치료를 끝내고 장해상태가 매우 중하여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지급
상병보상 연금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고도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가 폐질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경우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가입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하는 경우 지급
유족급여 및 장의비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그 당시 부양하고 있는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기타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고등학교 학비 지원(장해 1~7급), 생활안정자금 융자(장해 1~9급) 등의 혜택을 일정 요건 하에 부여

[별첨3] 재해발생 시 산재보상 청구 절차

- 재해가 발생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진료소견서 포함)를 작성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으로 바로 신청 (청구문의: 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 1588-0075)
-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시 해당 예술활동 계약서 제출 필요할 수 있음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창구

artinsure.kawf.kr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예술인’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직업 예술활동시 고용 보험에 가입하고 실업 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시행 ‘20.12.10)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현장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창구를 운영합니다.

지원내용

- 온라인 안내창구: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안내페이지 (artinsure.kawf.kr)
 - 제도소개 및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제공
 - 연중 상시 이메일 상담 및 온라인 설명회 운영
- 대면(오프라인) 안내창구: ‘21년 상반기 운영 예정’
 - 상시 유선/대면 안내
 - 찾아가는 설명회 운영
 -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안내책자 제작 및 배포

예술인 고용보험 주요특징

- 당연가입 제도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시 가입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계약기간(노무제공기간)과 계약금액(보수)로 가입
 -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란?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하여 예술인이 대가를 받고 일정한 기간 동안 제공하는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노무 지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을 통해 예술분야별 용역 예시 제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자료실에서 파일 확인)
- 이종가입 가능
 - ‘근로자 고용보험 +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 고용보험 + 예술인 고용보험’ 이종가입 가능
(기존 근로자 고용보험 이종가입 불가)

가입대상 및 보험료

- 가입대상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예술인’과 그 계약 당사자인 ‘사업주’
 - 제외: 예술인이 만 65세 이상이거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위해 타인을 고용한 경우
 - 가입의무: 보험가입, 보험료 납부 의무자는 사업주
 - 소득기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주 가입의무 없음.
단, 예술인 본인이 여러 계약 소득을 합하여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 복지공단으로 직접 가입신청
 - ※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시 위 소득기준 미적용, 사업주 의무 가입 (단기예술인 경우)
- 보험료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금액(보수) × 0.8(기준경비율 20% 적용) × 1.6%(보험요율)
 - 예술인과 사업주 각각 0.8% 부담

보험급여

- 구직급여(실업급여)
 - 내용: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지원
 - 수급요건: 이직일전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가입
 - 지급수준: 기초일액의 60% 수준 지급하며 상한액 일 66,000원(근로자 동일),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 동안 지급
- 출산전후급여
 - 내용: 출산한 여성이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
 - 수급요건: 출산(유산·사산)일 전 3개월 이상 가입
 - 지급수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수준 지급하며 상한액 월 200만원, 하한액 월 60만원 (기준보수의 60%) 예정, 3개월 동안 지급

업무담당 기관

기관	대상	주요 업무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보험가입, 보험료 금액 문의, 보험료 지원 신청 시 • 예술인 소득을 합산하여 본인이 가입신청 시	고용보험 가입, 보험료 징수, 피보험자격 관리 · 누리집 www.kcomwel.or.kr 대표번호 1588-0075 · 예술인고용보험 전담센터 (서울지역본부 가입지원4부) 대표번호 02-2097-9250 대표팩스 0502-223-3203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업주 보험료 고지서, 보험료 납부 문의 시	보험료 고지 및 수납, 체납관리 · 누리집 www.nhis.or.kr 대표번호 1577-1000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예술인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신청 시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운영 · 가입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담당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 사업주, 예술인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 필요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안내창구 운영 · 누리집 www.kawf.kr 대표번호 02-3668-0200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창구

별첨. 고용보험 비교		
	예술인 고용보험	근로자 고용보험
1. 가입대상		
포함	단기예술인 포함 예술인	일용근로자 포함 근로자
제외	50만원 소득 미만 65세 이후 신규	주 15시간 미만 65세 이후 신규
2. 보험가입		
취득신고	사업주 *소득을 합산하여 가입할 때는 예술인	사업주
가입기간 (피보험자격)	문화예술용역 계약 기간	근로계약 기간
3. 보험료 납부 (월평균 보수 * 보험요율)		
보수	사업소득+기타소득- 비과세소득-경비	근로소득-비과세소득
보험료율	실업급여 1.6%	실업급여 1.6% 고용안정·직업능력 0.25~0.85%
보험료 납부자	사업주	사업주
4.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		
수급요건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 이상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사유	비자발적 이직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 일부 인정	비자발적 이직
지급수준	이직 전 12개월 보수총액 기준 산정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평균임금 기준 산정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지급기간	120~270일	120~270일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 인정 여부	수급기간 중 소득발생 시 일부 감액 혹은 전부 지급	수급기간 중 취업한 날에 대해 구직급여일액 전부 감액
5.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지급내용	출산전후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6.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적용여부	미적용	적용



잠깐! 계약서 작성하셨나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예술인의 사회안전망과 권리보호를 위한 첫걸음,
서면계약서와 함께 하세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계 서면계약 체결문화 확산을 위해
모바일이나 PC를 통해 편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전자계약 체결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의료비 지원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예술활동의 복귀와 지속을 도와드리며, 예술인의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신청자격

- 과도한 의료비(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예술인 (중증질환 우선지원)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 가구원* 소득 합산금액이 중위소득 80% 이하이며 지역별 자산 기준 이하인 예술인
※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 내 1촌 직계 중 성인

-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80% 적용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원 (월)	1,462,265원	2,470,463원	3,187,160원	3,901,032원	4,605,898원	5,302,882원

- 지역별 자산 기준표(긴급복지지원사업 기준 준용)

지역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	중소도시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도의 ‘군’)
금액	18,800만원	11,800만원	10,100만원

지원내용

- 입원비·수술비·검사비·약제비·간병비·보장구구입비·재활치료비 등 의료비 중 실질적인 본인부담금 지원(1인 최대 300만원)

지원항목	지원내용	비고
입원 및 수술비	입원, 수술 등 제반비용 (중증질환 우선지원)	상급병실료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하나, 병원 내부사정으로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3일 이내 인정
고액 검사비	기 진단된 질병에 대한 연계질병으로 정밀검사 필요시 검사비 (의사소견서 제출 필수)	• MRI, CT 촬영 등
외래 진료비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환의 경우	• 항암 및 방사선 치료비, 혈액투석 등 지원 • 희귀의약품 사용의 경우, 한국희귀의약품 센터를 통한 의약품구입 지원가능 (소견서, 처방전 제출 필수)

지원항목	지원내용	비고
의료기기 및 보장구 구입비	해당질환과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진단서 및 처방전 필요)	노인용 단순 보장구 및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수급자 지원 제외
간병비	· 해당질환과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 병원이나 공인된 간병 협회 소속의 전문간병인에 지급하는 건에 한함 · 최대 3개월 200만원 이내 지원	수술 및 입원비를 우선 지원하며, 간병비 지원은 본인 거동이 매우 어려운 중증질환에 필요한 경우 한함
재활 치료비 등	물리치료비 등	해당 질환과 관련 있는 경우에만 지원

※ 선정 후 1개월 이상 치료를 진행하지 않아 예산불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취소 될 수 있음

지원제한

- 동일한 질환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의료비 지원 사업에 2회 연속 선정 · 지원을 받은 예술인 (동일질환 여부 질병코드로 판단)
※ 지원종료 후 1년을 경과하면 재신청 가능
- 기 결제된 의료비 소급지원 불가
- 각종 단순 검사비 등 일회적 치료와 검사가 가능한 질병 및 소액진료비
- 일반적인 시력교정술·치아교정 및 틀니시술·미용성형, 정신과 진료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단순검사 등
- 민간보험 및 타 기관, 국가기관 등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아 중복지원이 예상되는 경우
- 동일 건에 대해 정부의 긴급복지제도 및 타 기관에서 지원받고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된 경우
-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1년 2월~11월(예정) * 상세내용은 사업공고 참고
- 신청방법 - 이메일접수: medic@kawf.kr(신청서 양식 누리집 참조)
- 우편접수: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2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의료비지원 사업 담당자 앞(우 03088)

문의

사회보험팀 02-3668-0200, www.kawf.kr

예술인
의료비 지원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필수)	비고
신청서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질환상태	필수: 의사소견서(진단서) 필요시 제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내역서(중간계산서)	-
소득, 재산 관련 서류 (주민등록 상 1촌 직계 가족 서류 포함)	•가구원 관련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재산 관련 서류 - 건강보험납입내역서: 최근 12개월 납부 내역 발급 -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신청 전년도 서류 발급 •재산 관련 서류 - 전·월세 계약서 ※ 자가일 경우 등기부등본, 무료 거주자의 경우 무료임대확인서 제출	•수급자, 차상위계층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 외 서류는 해당 증명 서류로 대체 가능 •개인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부채잔액 증명서, 금융거래 확인서 제출 가능
보험가입 여부	•보험가입조회서	•내보험찾아줌 누리집: cont.insure.or.kr

지원절차

예술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해당병원		
신청서 제출	>	행정심의	>	심의위원 심의	>	선정 및 지원

- 행정검토: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확인을 통한 지원적합성 내부검토
- 의료심의: 의료진, 의료사회복지사 3인 이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치료의 시급성, 질환 상태,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료비 지원 목적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하여 심의

지원방식

해당 의료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 원칙 (본인이 납부한 병원비에 대해 소급 적용되지 않음)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원 확정 후에라도 지원 자격이 부적격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지원금을 회수조치하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지원 결정 시, 신청 당시 기재한 질환에 대한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 의료비 지원은 의료기관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비 지원에 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 선정 이후 의료비 지원결정금액이 실제 의료비 청구금액과 과도한 차이가 나는 경우 지원결정 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별 발급처 안내 및 참고사항

접수서류	발급장소	
	인터넷 발급	오프라인 발급
진단서(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등	-	해당 의료기관
주민등록등본	민원24 (www.minwon.go.kr)	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과세증명서	민원24 (www.minwon.go.kr)	
기초생활수급증명, 차상위계층 증명 등	민원24 (www.minwon.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소득확인증명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홈택스(www.hometax.go.kr)	지역 세무서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	-	은행 등
보험가입조회서	내보험찾아줌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예술인에게는 육아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시설이
용 유아와 아동에게는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과 전문가 돌봄서비스, 안정적 보육서비스, 양질의
예술교육 콘텐츠, 연령 통합 돌봄으로 긍정적 사회성이 형성되도록 합니다.

이용대상

- 24개월~10세 예술인 자녀
※ 단, 형제자매가 함께 이용하거나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만 12세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센터소개

구분	반디돌봄센터	예술인자녀돌봄센터
특징	• 공연단체와 극장이 밀집해 있는 대학로 주택에 위치 • 유기농 식자재를 활용해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와 간식 제공	• 아이들이 집처럼 뛰어놀 수 있는 주택 • 유기농 재료로 만든 가정식 식사와 간식 제공
위치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2길 19, 1층 (이화동 4-1) • 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출구 도보 10분거리 • 버스 100, 109, 143, 150, 160, 273, 301, 710, 2112 통신대 하차	서울시 마포구 방울내로11길 15-4 (망원동 473-30) •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 5번출구 도보 2분거리 • 버스 7011, 271, 7733, 163, 601, 606 마포구청 하차
시설규모	28평 (방2, 주방1, 화장실1)	54평(방3, 주방1, 화장실2, 학부모 공간)
운영인력	센터장 1인, 돌봄교사 5인 교대근무	센터장 1인, 돌봄교사 5인 교대근무
운영시간	• (화~금) 13:00~22:00 ※ 월요일 휴무 • (토) 09:00~22:00, (일) 09:00~20:00 • 단, 23시까지 돌봄 필요시 1일 전 사전예약	• (화~일) 11:00~20:00 ※ 월요일 휴무 • 단, 09:00~11:00, 20:00~22:00 돌봄 필요시 2일 전 사전 예약
프로그램	미술활동, 요리활동, 동화구연, 신체활동 등	영유아~아동의 자기주도적, 연령통합적 놀이 프로그램 운영
전화	02-741-0347	02-3143-1919
온라인	http://cafe.daum.net/bandicare	http://cafe.naver.com/yebomcenter

이용방법

- 각 돌봄센터 문의 후 회원가입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신청가능)
- 사전예약제로 운영 (하루 전까지 예약, 전일이 휴관일일 경우 2~3일 전 예약)
- 24~48개월의 유아는 전담인력 배정을 위해 1일 전 예약 필수
- 긴급한 경우, 10~13세(초등학생)인 형제자매를 동반할 경우 사전 문의 필수

문의

- 반디돌봄센터(대학로) 02-741-0347
- 예술인자녀돌봄센터(마포) 02-3143-1919
- 예술인지원팀 02-3668-0200, www.kawf.kr

창작준비금
지원
- 창작디딤돌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상대적으로 낮은 예술활동 수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예술활동을 준비, 지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사업명	2021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사업대상	•예술 창작 활동을 준비 중인 예술인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가구원* 소득인정액 120% 이내인 예술인 * 가구원: 혼인관계증명서 상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 - 소득인정액 기준 금액(월):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1인 가구 2,193,397원 / 2인 가구 3,705,695원 ※ 가구원 소득인정액 합산 금액이 위의 기준금액 이내인 경우 신청 가능 •원로예술인(만 70세) 및 장애예술인: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정 (배점제 미적용)
참여제한	•당해연도 실업급여 수급자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3개월 이하 대상자 •2020년도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일반/원로) •2021년도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참여 예술인 •재단사업 참여제한을 통보 받은 예술인
지원규모	1인당 300만원
지원인원	12,000명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업 공고 및 시행지침 참고
- ※ 원로예술인: 만 70세 이상 예술인은 사업 신청시 ‘원로예술인’으로 분류되어 자격요건 충족 시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신진예술인 창작준비지원금 제외) 우선 선정 (배점제 미적용)
- ※ 장애예술인: 장애예술인은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정 (배점제 미적용)
- ※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사업명	2021년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사업대상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특례’ 완료자 - 하반기(6월 이후) 진행 예정 ※ 자세한 사항은 추후 사업공고 참고
지원규모	3,000명(1인당 200만원)

진행 절차

신청	심의	발표	교부	제출	종료
•예술활동 증명 유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행정심의 •소득인정액 조사 •배점합산	•심의결과 개별 공지(문자 메일 창작준비금 시스템)	•창작 준비금 교부	•활동보고서 제출 •원로예술인의 경우 사업 신청시 교육 과정 수료로 대체	•(승인) 사업종료 •(미제출 또는 미승인) 우리재단 사업 참여 제한

선정 방법

- 제출서류 및 입력 사항에 근거
- ① 행정심의회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등에 대한 조사
- ② 전문가 자문심의를 통한 지원 적격 여부 심의
- ③ 부문별 배점 합산을 통해 최종 선정

배점기준표

부문	항목	배점	산정방법
소득 분위	기준 중위소득 0~30%	9점	사회보장정보원 연계
	기준 중위소득 31~60%	8점	
	기준 중위소득 61~90%	7점	
	기준 중위소득 91~120%	6점	
기타	최초 수혜자 ¹⁾	기타배점의 경우 해당자에 한해 최대 1점 인정	예술인경력정보 시스템연계
	농·어촌 지역 예술인 ²⁾		등본 추가 제출
	코로나 19 피해 예술인 ³⁾		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 1) 2020년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지원사업(원로 포함)에 선정 기록이 없는 예술인
- 2)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거주지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의 가항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6호 가항에 따른 농어촌 지역 거주 예술인
- 3) 코로나19로 인하여 격리, 공연·계약 취소 등의 피해 사실이 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예술인이 해당 사실을 소명 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재단양식) 제출 시 심의 후 배점 부여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 제출서류(필수):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 1부, 통장사본 1부
- ※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의 가구원을 확인하는 서류로, 결혼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입니다.
- 제출서류(해당자): 농·어촌 지역 예술인 배점 > 등본 제출(주소 및 신청인정보 외 미포함 발급 필수),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배점 > 사실확인서 제출
- 신청방법: 우편, 온라인 ※ 해당 사업 공고 시, 신청 방법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문의 창작준비지원팀 02-3668-0200, www.kawf.kr

예술인
파견지원
- 예술로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 확산 및 다양한 예술직무영역을 개발하고, 예술과 사회의 상호협력을 통해 창의적 사회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술가 스스로의 예술적 개입으로 적극적 예술인 복지를 구현합니다.

2021년 예술로 사업 주요 변경 사항 -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 도입배경: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2020.12.10.)됨에 따라, 예술로 사업의 예술협업활동에 대해 ‘문화예술용역’ 적용 확정
- 가입대상: 예술로 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 가입기간: 예술로 사업 활동 기간(약 6개월)
- 신고 및 납부 주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고용보험료: 월 활동비의 1.6%를 재단(사업주)과 예술인이 각각 0.8%씩 부담
 - ※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에 따라 활동비에 소득세법이 적용되어 과세대상으로 변경됨 (고용보험료와 별도로, 사업소득세 총 3.3% 제외 후 활동비 지급)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공통사항]

1) 리더예술인·참여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 ※ 활동기간동안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하여야 함.
- 중복사업 참여 제한
 - 2021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교부받은 예술인
- 재단사업 참여 제한: 재단사업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예술인
- 2020년 시행된 <연속 참여 제한 제도>의 경우, 상세 내용은 모집공고 참고

2) 기업·기관(마을)

- 예술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예술을 통한 이슈를 해결, 혁신하고자 하는 기업·기관(마을)
- 예술협업활동에 대한 적극적 지원 및 협조가 가능한 기업·기관(마을)
 -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필수

※ 지원신청 제한 기업·기관(마을)

- 종교기관, 정치적 이익집단 및 관련 기관의 소속단체
 - ※ 단, 종교법인이 공익을 목적(복지·보건의료·교육 등)으로 운영하는 시설 중 종교 및 정치단체와 독립된 사업장으로 분리되는 경우 허용
- 학교 및 사회예술강사, 생활문화센터 강사의 역할을 요구하는 기업·기관(마을) (단순교육 형태)
- 공공기금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예술관련 프로젝트성 사업에 참여할 예술인을 섭외하기 위해 신청하는 기업·기관(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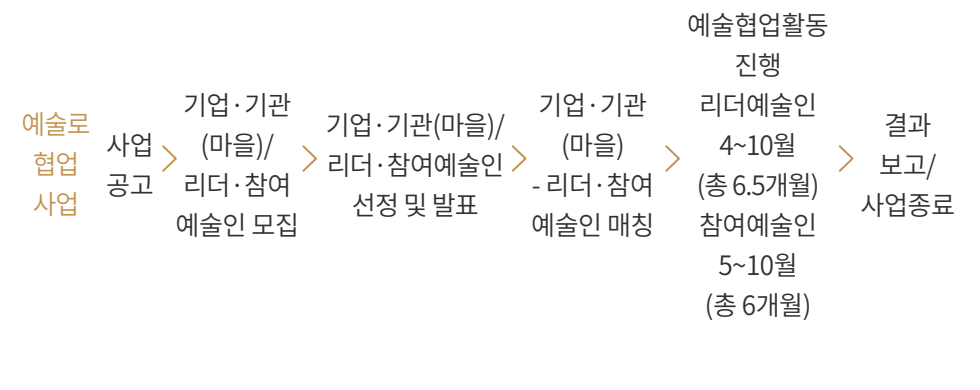
I 예술로
협업사업

사업구조

참여 주체별(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기업·기관(마을)) 공모를 통해 선정한 후 매칭

추진체계

구분	시기별 단계			
	2월	3월~4월	5~10월	11월



지원규모 및 내용

구분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지원규모	• 총 910만원 - 사전활동기간(0.5개월): 70만원(* 세액공제 전) - 활동기간(6개월): 월 140만원(* 세액공제 전)	• 총 720만원 - 활동기간(6개월): 월 120만원(* 세액공제 전)
지원 내용	• 예술협업활동 기회(매칭) 및 직업역량강화 직무교육 지원	• 예술협업활동 기회(매칭) 지원

I 예술로 협업사업

선정심의

1) 리더예술인·참여예술인

- 심의절차: 1차 서류심의 및 2차 면접심의 후 기업·기관(마을) 매칭 완료자에 한해 최종 선정
※ 2차 심의(면접) 선정자에 한해 기업·기관 매칭 기회 부여
- 심의방법
 - 1차 서류심의: 지원신청 시 제출된 서류에 기반하여 평가항목별 부합여부 배점심의
 - 2차 면접심의: 서류심의 선정자를 대상으로 소통 및 문제해결능력, 기획 및 성과관리 또는 협업능력 등에 대한 종합심의
※ 2차 심의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심의방식이 변경될 수 있음
※ 상세 심의기준 모집공고 참고

2) 기업·기관(마을)

- 심의절차: 서류심의를 통해 우선매칭대상 기업·기관(마을) 선정 후 리더예술인과 매칭된 기업·기관(마을)에 한해 최종 선정
- 심의방법: 지원신청시 제출된 서류에 기반하여 사업의 이해, 예술적 개입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이슈의 내용, 예술인에 대한 추가 지원규모 등에 대한 종합심의
※ 상세 심의기준 모집공고 참고

활동내용

1) 리더예술인

예술인의 예술적 역량·경험과 참여기업·기관(마을)을 매개하여 예술협업활동을 마련하고 프로젝트를 기획 및 운영하는 역할

- 팀 내 참여예술인들이 수행하는 예술활동 조력, 개입(월 10일, 30시간 이상)
- 활동과정 공유를 위한 월 1회 활동보고서 및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참여예술인 개별 프로젝트 활동 성과관리 및 기록(도큐멘테이션, 아카이브 등)
- 재단이 주최하는 오리엔테이션, 간담회 등 행사 참여

2) 참여예술인

리더예술인과 함께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

- (매칭된) 기업·기관(마을)과의 예술적 협업 제안 및 진행(월 10일, 30시간 이상)
- 활동과정 공유를 위한 월 1회 활동보고서 및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활동내용 기록(도큐멘테이션, 아카이브 등)
- 재단이 주최하는 오리엔테이션, 간담회 등 행사 참여

3) 기업·기관(마을)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과의 예술협업 프로젝트 운영

- (매칭된)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과 예술적 협업 진행
- 예술인 월별 활동보고서 검토 확인 및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예술협업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부가적 지원(활동 공간, 제작비, 운영비, 부대 활동비 등)
- 재단이 주최하는 오리엔테이션, 간담회 등 행사 참여

제출서류 및 방법

1) 리더예술인·참여예술인

- 제출서류: 사업참여신청서 및 포트폴리오(지정양식) 각 1부
※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고용처, 근로기간, 근로시간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제출
- 신청방법: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을 통한 온라인 제출

2) 기업·기관(마을)

- 제출서류: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기업·기관(마을) 소개자료 각 1부
- 신청방법: 예술로사업통합시스템(goartist.kawfartist.kr)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제출
- 문의: 예술가치확산팀 02-3668-0200, www.kawf.kr

I 예술로 기획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예술로 사업-공통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및 기업·기관(마을)이 한 팀이 되어 예술협업활동 사전기획을 통해 기업·기관(마을)의 이슈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룹

- A타입: 2020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서 함께 활동했던 팀
※ 기업·기관(마을)은 동일해야하며, 예술인 구성은 일부 변경 가능
- B타입: 새로운 예술협업방식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신규 팀
※ 팀별 기업·기관(마을) 1곳, 리더예술인 1인 및 참여예술인 3인 이상~5인 이하 구성
※ 팀별 2가지 이상 예술분야 혼합 구성 필수 (예술분야는 예술활동증명 분야 구분에 따름)
※ 팀내 각 주체(기업·기관(마을)-리더예술인-참여예술인)는 중복될 수 없음

추진체계

구분	시기별 단계			
	2~3월	4월	5~10월	11월
예술로 기획 사업	공고 및 모집	참여 팀 선정 및 발표	예술협업활동 진행 리더/참여예술인 5~10월 (총 6개월)	결과보고/ 사업종료

지원규모 및 내용

구분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지원규모	• 총 840만원 - 활동기간(6개월) - 활동비 격월지급: 회당 280만원(* 세액공제 전)	• 총 720만원 - 활동기간(6개월) - 활동비 격월지급: 회당 240만원(* 세액공제 전)
지원내용	• 예술협업활동 기획 및 직업역량강화 직무교육 지원	

I 예술로 기획사업

선정심의

- 심의절차: 1차 서류심의 및 2차 PT·인터뷰심의 후 최종 선정
- 심의방법
 - 1차 서류심의: 지원 신청 시 제출된 서류의 종합검토를 통해 2차 심의 대상 팀 선정
 - 2차 PT·인터뷰심의: 1차 심의 선정 팀을 대상으로 PT 및 심층 인터뷰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팀 선정
 - ※ 2차 심의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심의방식이 변경될 수 있음
 - ※ 상세 심의기준 모집공고 참고

활동내용

1) 리더예술인

예술인의 예술적 역량·경험과 기업·기관(마을)을 매개하여 예술협업활동을 마련하고 프로젝트를 기획 및 운영하는 역할

- 팀 내 참여예술인들이 수행하는 예술활동 조력, 개입(2개월 내 20일, 60시간 이상)
- 활동과정 공유를 위한 격월 팀 활동보고서 및 최종 개별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참여예술인 개별 프로젝트 활동 성과관리 및 기록(도큐멘테이션, 아카이브 등)
- 재단이 주최하는 오리엔테이션, 간담회 등 행사 참여

2) 참여예술인

리더예술인과 함께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

- 기업·기관(마을)과 예술적 협업 제안 및 진행(2개월 내 20일, 60시간 이상)
- 활동과정 공유를 위한 격월 팀 활동보고서 및 최종 개별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활동내용 기록(도큐멘테이션, 아카이브 등)
- 재단이 주최하는 오리엔테이션, 간담회 등 행사 참여

3) 기업·기관(마을)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과의 예술협업 프로젝트 운영

-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과 예술적 협업 진행
- 예술인 격월 팀 활동보고서 검토 확인 및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예술협업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부가적 지원(활동 공간, 제작비, 운영비, 부대 활동비 등)
- 재단이 주최하는 오리엔테이션, 간담회 등 행사 참여

제출서류 및 방법

- 팀 별 리더예술인 신청
- 제출서류: 사업참여신청서, 협업활동계획서, PT자료 각 1부
 - ※ PT자료의 경우, 1차 심의 이후 2차 심의 대상 팀에 한하여 추가 제출
 - ※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고용처, 근로기간, 근로시간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제출
- 신청방법: 예술로사업통합시스템(goartist.kawfartist.kr)을 통한 온라인 제출
 - ※ 지원신청 전, 함께 참여하는 기업·기관(마을)의 예술로사업통합시스템 가입 및 신청서 작성 필수

문의 예술가치확산팀 02-3668-0200, www.kawf.kr

I 예술로 지역사업

사업구조

공모를 통해 선정된 광역문화재단별 예술로 사업 추진

추진체계

구분	시기별 단계		
	2월	3~11월	12월
예술로 지역 사업	광역문화재단 모집 공고 및 선정	> 광역문화재단별 예술로 사업 추진 >	결과보고 / 사업종료

지원규모 및 내용

- 광역문화재단 10개 내외 선정(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광역문화재단은 제외)
- 기관별 최대 예술인 60명 운영(예정)
 - ※ 운영규모 별 예술인 활동비 및 사업운영비(예술인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금 포함) 지원
 - ※ 상세내용 모집공고 참고

선정심의

- 심의절차: 서류심의 진행
- 심의방법: 지원 신청 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기반하여 운영기관 선정(예정)
 - ※ 상세 심의기준 모집공고 참고

제출서류 및 방법

- 제출서류: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제출방법: 공문을 통한 신청·접수
 - ※ 광역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예술로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예술인의 경우, 해당 광역문화재단을 통해 자세한 내용 추후 확인

문의

예술가치확산팀 02-3668-0200, www.kawf.kr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

예술인과 사회의 협력을 통해 예술의 가치를 확산하고 새로운 예술 직무 영역을 개발함으로써 적극적 예술인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예술적 직업 기초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특례를 완료한 예술인 90명 내외

추진체계

구분	시기별 단계					
	5~6월	7월	7~8월	8월	9~10월	11월
예술로 역량강화 지원	공고 및 모집	> 온라인 강의	> 실습 참여 공고	> 심의	> 실습 진행 및 지원금 교부	> 사업종료

지원규모 및 내용

구분	세부내용
지원금액	• 총 50만원 - 활동기간(3개월 이내)
지원내용	• 예술현장에서 신진예술인에게 필요한 직업역량을 강화하고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로 사전 활동의 디딤돌 역할 마련을 위한 온라인 교육 및예술 역량 강화 지원 • 온라인 강의 이수 및 협업, 활동 제안서 제출(실습) 후 지원금 지급

선정심의

- 심의절차



- 심의방법

-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와의 연계 가능성
- 역량강화 활동 계획의 구체성
- 기업·기관(마을)과의 협업 가능성
- 신청서 및 포트폴리오, 경력 등 검토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심의방식이 변경될 수 있음

※ 상세 심의기준은 모집공고 참고

활동내용

- 온라인 교육을 통한 예술 역량 강화
- 기업·기관(마을)과의 협업 방안에 대한 제안 및 홍보 실습을 통한 직업 역량 강화
- 역량강화 온라인 강의 지원 및 사업 결과물(예술활동 전략, 사업계획서, 제안서, 홍보 전략 작성 등) 도출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신청서(경력 증빙 자료 등 추가 제출 가능) 작성 후 이메일 접수(연 1회)
 - 온라인 강의: 예술인 누구나 강의 기간 내 시청 가능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goartist@kawf.kr)
 - ※ 지원 신청 전,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특례 완료자 여부 확인 필수
 - ※ 상세 신청기간 및 방법 모집공고 참고

문의

예술가치확산팀 02-3668-0200, www.kawf.kr

예술인
생활안정
자금
(용자)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한 예술인들의 창작환경 개선 및 생활기반 마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저금리 대출상품을 운영합니다.

지원대상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유효기간 3개월 이상)

지원내용

- 생활안정자금대출
 - 대출한도는 최고 700만 원 이내이며 단, 긴급 생활자금의 경우 최고 500만 원 이내
 - 이율 2.2% (2021년 1/4분기 기준), 연체이율 5.2% (대출금리에서 3% 가산)
 - 상환기간 3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선택 가능)

대출유형	용자요건	신청기한
의료비	신청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요양 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하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 산후 조리원 이용에 든 비용 또는 노인성질환으로 진단된 후 요양 시설 이용에 든 비용 ※ 의료비 영수증 상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대출금 승인 (대출 최소 금액: 50만원)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부모 요양비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 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 주민등록등본 상 피부양자 또는 건강보험증 상 피부양자로서 ‘부양’인 경우에 한함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80일 이내
장례비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 ※ 주민등록등본 상 피부양자 또는 건강보험증 상 피부양자로서 ‘부양’인 경우에 한함	사망일로부터 180일 이내
결혼자금	신청자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에 드는 비용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180일 이내
긴급생활 자금		자금 필요 시점부터 180일 이내

- 전세자금대출
 - 대출한도는 최고 1억 원이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이율 1.7% (2021년1/4분기 기준) , 연체이율 4.7%(대출금리에서 3% 가산)
 - 상환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 (동일주택 3회 연장가능, 최장 8년)

- 코로나19 특별용자
 - 시행방안 수립 후 진행 예정(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누리집에서 별도 공지)

대출유형	용자요건	신청기한
전세자금	• 전세자금에 대하여 대출 ※ 월세, 반전세 해당 없음 (공공임대주택 제외) • 전세대출 부동산은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에 한함. ※ 해당 부동산에 권리침해가 있을 경우 대출이 전부 또는 일부 제한될 수 있음 • 임차전용면적은 85m ² 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동 지역은 100m ² 이하) • 입주기간은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누리집 공고 확인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누리집 공고 확인

신청방법

- 생활안정자금대출
 -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누리집(www.artloan.kr) 및 KEB하나은행 혜화동 지점 방문 신청

	단계	내용
	사전준비	• 예술활동증명서 발급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 • 대출 상품별 준비서류 확인 →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누리집 • KEB하나은행 계좌 개설
	대출신청	온라인 접수 →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누리집 상담·접수 KEB하나은행혜화동 지점
	심사	1. 기본 서류 확인 2. 조건 확인 3. 우선순위 확인 등 4. 한도 설정
대출승인 발표일 포함 5일 이내 완료	• 온라인 금융교육 (필수사항) • 약정서 체결 • 자동 이체 신청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누리집 -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 KEB하나은행 혜화동 지점 및 전국 KEB하나은행 지점
	대출금 지급	신청계좌(KEB하나은행)

예술인
생활안정
자금
(용자)

- 전세자금대출
 - 사전신청 및 기본심사: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누리집(www.artloan.kr) 및 KEB하나은행 혜화동 지점 방문
 - 본 서류 접수 및 심사: 기본심사 통과자에 한해 본 서류 접수 및 심사 진행
 - 권리조사 기관을 통한 대출 적격성 확인 절차 진행
- 대출금 지급절차

사전신청 및 기본심사	본서류 접수 및 심사	최종계약	권리조사	전입 후
(누리집 또는 KEB하나은행 혜화동지점)	(KEB하나은행 혜화동지점)	(KEB하나은행 혜화동지점)	대출금 지급 전세입주	주인등록 등본 제출

제출서류

- 생활안정자금대출

대출유형	제출서류	공통서류
의료비	① 의사진단서(소견서) ② 진료비청구서(영수증) (산후조리원 또는 요양시설)	
부모요양비	① 의사진단서(소견서) ② 요양시설 비용증명서(영수증)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장례비	① 장례식비용 증명서(영수증) ②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② 주민등록등본 ③ 소득금액증명서 ④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자금	①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혼인신고 시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⑤ 개인정보동의서(제3자)
긴급생활자금	① 사실관계확인서 ② 용자추천서	

- 전세자금대출

차수(서류종수)	서류명
1차 (4종)	① 신분증사본 ② 전세대출 신청서 ③ 개인정보동의서 (본인) ④ 전세자금대출 제한요건 체크리스트

차수(서류종수)	서류명
2차 (13종)	⑤ 주민등록등본 ⑥ 가족관계증명서 ⑦ 소득금액증명원 ⑧ 개인정보동의서 (제3자) ⑨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⑩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⑪ 계약금 영수증(보증금 5%이상 납부) ⑫ 건축물대장 ⑬ 부동산공제증서 ⑭ 위임장 (대출금지급) ⑮ 위임장 (포괄) ⑯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과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⑰ 근질권설정계약서
3차 (3종)	⑱ 약정서(전세) ⑲ 자동이체신청서 ⑳ 금융교육이수증

제한조건

구분	제한조건
생활안정자금대출	①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신용도판단정보 보유 및 연체 중인 사람 ②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③ 본인 및 배우자가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보유한 경우 ※ 완납 후 신청 가능 ④ 휴대폰 본인인증 미 통과자(본인이 아닌 경우) ⑤ ‘긴급 생활자금’의 경우 연 소득 2,000만원 초과인 자
전세자금대출	• 공통 ①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신용도판단정보 보유 및 연체 중인 사람 ②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③ 생활안정자금대출 보유자 ※ 완납 후 신청 가능 ④ 휴대폰 본인인증 미 통과자(본인이 아닌 경우) ⑤ 임차전용면적은 85㎡ 초과(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동 지역은 100㎡ 초과) • 임차인 ① 유주택자(본인 및 배우자) ② 전세물건(임주예정주택)에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자 ③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계존비속으로 확인되는 경우 ④ 공동 임차인 • 임대인 ① 법인(공공임대사업자는 가능) ② 외국인 및 해외거주 대한민국 국민 ③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에 거부의를사를 표시하는 자

예술인 패스

예술인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관람료 할인 및 생활 속 공간 할인의 혜택을 드립니다.

신청자격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 학예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자
- 미술관·박물관의 관장 또는 설립자

발급절차

예술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청서 (온라인)	>	확인	> 발급 (모바일카드 발급)

※ 학예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자의 경우 신청서와 함께 자격증 첨부

※ 미술관, 박물관의 관장 또는 설립자의 경우 신청서와 함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첨부

※ 재단 확인 후 모바일카드 발급

모바일카드 확인 및 이용하기

모바일카드 확인방법

- 예술인패스 누리집 접속
※ PC 및 모바일 모두 접속 가능
- ‘발급확인’ 페이지 선택→아이디 및 비밀번호 입력→로그인
※ 아이디 및 비밀번호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과 동일
- “모바일 카드” 발급 정보 확인→성명, 생년월일, 분야
- “모바일 카드” 화면 캡처→사진첩 저장 후 신분증과 함께 제시하여 사용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아이디가 여러 개인 경우 ‘모바일카드 미발급’ 상태로 확인 될 수 있음
- 아이디 및 비밀번호 찾기를 통해 가입된 아이디 조회 가능



※ PC, 모바일 환경의 따라
예술인패스카드 시안이
다소 상이할 수 있음

혜택

-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관람료 할인 및 생활 속 공간 할인 혜택 제공
- 매월 할인 혜택 정보 제공(이메일)
※ 상세한 할인 및 혜택 사항은 예술인패스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신청방법

- 신청방법: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을 통해 발급신청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발급주기: 월 2회
- 문의: 예술인지원팀 02-3668-0200, www.kawf.kr
예술인패스 누리집 <http://artpass.kawf.kr:9090>

예술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제2조 관련)

[별표 1] <개정 2016. 5. 4.>

1.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사람은 문화예술 분야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아래 표의 2 이상의 문화예술 분야나 세부 기준란의 2 이상의 목에 해당되는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술활동증명을 위한 하한 기준을 1점으로 보아 해당 실적을 점수로 환산(예를 들어, 3년에 3편이 하한일 경우 3년에 1편의 실적이 있으면 1/3점으로 한다)하여, 그 환산점수의 합계가 1점 이상인 사람도 포함한다.

문화예술 분야	세부 기준
문학	가.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시(동시), 시조, 수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최근 5년 동안 1편(단편의 경우는 3편) 이상의 소설(동화, 청소년), 평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최근 3년 동안 1편 이상의 희곡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평론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미술 (응용미술을 포함) 사진, 건축	가.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 미술·사진·건축 작품을 관련 매체에 발표하거나 미술·사진·건축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최근 5년 동안 1회 이상 미술·사진·건축 작품 개인전을 열거나 1권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최근 3년 동안 3회(예술감독 등 기획자의 경우는 1회)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전시회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음악,국악	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국악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최근 3년 동안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 등에 3편 이상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최근 3년 동안 3곡 이상의 악곡을 작사, 작곡, 편곡, 가창 또는 연주하여 음반이나 음악·국악 공연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최근 3년 동안 1장 이상의 음반을 내거나 1권 이상의 음악·국악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마. 최근 3년 동안 음악·국악 공연에서 3회 이상 지휘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바.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국악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음악·국악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사.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국악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아. 최근 3년 동안 3장 이상의 음반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별표 1] <개정 2016. 5. 4.>

문화예술 분야	세부 기준
무용	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최근 3년 동안 무용 공연에서 1회 이상 안무를 담당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무용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연극	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최근 3년 동안 연극 공연에서 1회 이상 연출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최근 3년 동안 1편 이상의 희곡을 연극 공연이나 관련 잡지 등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연극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마.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영화	가. 최근 3년 동안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3편 이상의 영화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최근 5년(「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호제7호에 따른 단편영화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에서 1회 이상 연출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최근 5년 동안 1편 이상의 시나리오를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를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영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영화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마. 최근 5년 동안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2편 이상의 영화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예술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제2조 관련)

[별표 1] <개정 2016. 5. 4.>

문화예술 분야	세부 기준
연예(演藝)	가. 최근 3년 동안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방송된 드라마, 예능·교양 프로그램 등에 3편 이상 출연하거나 1편 이상 연출 또는 진행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최근 3년 동안 패션쇼에 3회 이상 출연하거나 3편 이상의 광고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예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최근 3년(드라마 중 연속극의 경우는 최근 5년) 동안 1편 이상의 대본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방송된 드라마, 예능·교양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마.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만화	바.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사.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예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가. 최근 5년 동안 1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6개월 이상 연재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만,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나.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만,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최근 5년 동안 1권 이상의 만화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만화	라.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 만화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마.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만화 비평을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만화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만, 만화 비평 발표의 경우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바.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만화 작품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기술지원 인력의 경우는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참여)
	사. 최근 5년 동안 3회 이상의 만화 전시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2.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술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가. 예술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최근 1년 동안 12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동안 360만원 이상인 사람
- 나. 최근 3년 동안 예술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사람

비고: 제1호의 만화란의 소득 및 제2호의 예술활동으로 얻은 소득은 예술활동에 대한 대가로 받은 임금 및 수당, 원고료, 인세, 저작권료, 저작인접권료, 예술품 판매대금, 보조금, 기부금, 상금 등을 포함하며, 강연료는 제외한다.

예술활동
증명의
유효기간
(제2조의3 관련)

[별표 2] <개정 2016. 5. 4.>

1.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별표 1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문화예술 분야	세부 기준	유효기간
문학	별표 1 제1호 세부 기준란(이하 “세부기준란”이라 한다)의 가목, 나목, 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	5년
	세부기준란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3년
미술 (응용미술을 포함) 사진, 건축	세부기준란 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5년
	세부기준란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3년
음악, 국악	-	3년
무용	-	3년
연극	-	3년
영화	세부기준란 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3년
	세부기준란 나목, 다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	5년
연예(演藝)	세부기준란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마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사람	3년
	세부기준란 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5년
만화	-	5년

2.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유효기간
가. 예술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최근 1년 동안 120만원 이상인 사람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5년
나. 예술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최근 3년 동안 360만원 이상인 사람	3년
다. 최근 3년 동안 예술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사람	5년

3. 영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예술활동 증명 운영 지침

별첨

제 정	2014.12.19.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34호
개 정	2015.05.28.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37호
개 정	2017.03.16.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42호
개 정	2019.12.23.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55호
개 정	2020.03.03.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56호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의 인정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술인 복지 지원이라는 법 제정의 취지가 실현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기본원칙)

- ① 법상 예술인은 전문적인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문적이란 상당한 지식과 경험 및 수준을 전제로 하고 취미나 여가 활동의 일환이 아니라는 뜻이다.
- ② 법상 예술인은 자신을 예술인으로 인식하는 정체성이 분명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활동 경력이 예술인으로 인정받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 ③ 문화예술의 범위를 한정할 수는 없으므로 법상 규정된 분류에 맞지 않더라도 예술활동임이 분명할 경우 심의를 통하여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 ④ 법상 예술인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정되나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 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3.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 국적동포
 5.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제2장 신청

· 제3조(신청방법)

예술활동증명 신청방법에는 개별 신청과 문화예술 분야별 협회 및 단체(이하 “협·단체”라 한다)를 통한 신청이 있다.

· 제4조(협력 협·단체의 지정)

- ① 심의위원회는 문화예술 분야별 협·단체 중 엄격한 회원관리(가입 조건, 자격 심사 등)를 전제로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력 협·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인격의 전문예술(인) 협·단체
 2. 해당 문화예술 분야 예술인 다수가 소속된 협·단체

- ②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협력 협·단체에 대해 표본 검증, 민원 발생 시 검증 등 신뢰도 확인을 통해 협력 지속 여부를 결정하되, 최초 3년은 매년 협약을 갱신하며, 3년 연속 협약을 맺었을 경우 이후로는 3년 주기로 협약을 갱신한다.

· 제5조(협력 협·단체를 통한 신청절차)

- ① 협력 협·단체는 신청을 희망하는 소속 회원의 경력을 시행규칙 별표 및 동 지침의 기준에 따라 사전 검증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재단에 제출한다.
- ② 재단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승인을 받은 후에라도 민원이 발생하면 다시 점검하고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장 심의위원회

· 제6조(심의방법)

예술활동증명의 심의방법은 행정심의와 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 두 가지로 구분한다.

1. 행정심의는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에 따라 제출된 서류 검토 및 실적 또는 소득 기준 부합여부를 결정한다.
2. 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는 제1호에 따라 부합된 자료에 대해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완료 여부를 결정한다.

· 제7조(심의위원회의 운영)

- ① 심의위원회는 문화예술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위원장들로 구성된 전체위원회로 운영된다.
- ② 심의위원회는 행정심의를 재단에 일임하고 행정심의를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다.

· 제8조(분과위원회)

- ① 심의는 원칙적으로 문화예술 분야별 분과위원회에서 진행하며 분과위원회는 3명에서 10명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단, 전체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분과위원회는 문학, 미술(일반), 미술(디자인/공예), 미술(전통미술), 사진, 건축, 음악(일반), 음악(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방송), 연예(공연), 만화 등 15개로 한다.

· 제9조(전체위원회)

전체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한다. 단, 긴급한 논의가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복합 심의 등)

- ① 예술활동 실적이 여러 문화예술 분야에 걸쳐 있어 복합 심의가 필요한 경우 복수 분과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 ② 신청자의 직업이 속하는 분야와 작품이 속하는 분야가 다를 경우 복수 분과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 ③ 해당 분야가 어느 분야에 속하는지가 불확실하거나 기존 문화예술 분야로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 가장 근접한 분야에서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제3항의 경우 복수 분과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를 특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 ⑤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특례의 경우 신속한 심의를 위해 해당 분과위원회의 심의위원 1인과 재단 직원 1인으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예술활동 증명 운영 지침

제4장 인정기준

· 제11조(예술활동의 범위)

예술활동은 국내와 해외에서의 예술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 제12조(예술활동의 기준)

어느 분야의 기준을 적용할지는 작품을 근거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어, 무용수가 연극 공연에 출연했을 경우 연극 분야 기준을, 악기 연주자가 무용 공연에 출연했을 경우 무용 분야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주로 연극계에서 활동하며 장치, 조명, 분장, 의상 등을 담당하는 무대미술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작업 부분만을 모아 개인전을 열었을 경우 연극 분야 기준에는 전시회가 없으므로 미술 분야 기준을 적용한다.)

· 제13조(기준 기간의 산정)

- ① ‘1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예를 들어, 기준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 문학에서 2010년 5월 5일로 기록된 저작물의 경우 유효 기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이다.)
- ② 기준 기간이 산정되는 시점은 저작물의 첫 공표일자로 한다. 단, 출연,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인력 중 저작물 공표 현장에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인력의 경우 최종 공표일자를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 ③ ‘최근’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기준 기간이 5년인 미술의 경우 예술활동증명 신청일자가 2014년 7월 1일이라면 ‘최근 5년’은 200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로 한다.)

· 제14조(기준 실적의 산정)

- ① ‘1편’ 또는 ‘1곡’이란 독립된 작품을 말한다.
- ② ‘1권’이란 독립된 서적으로 원칙적으로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를 부여받은 경우에 한한다. 단, 문학 분야 연속출판물의 경우 각각을 1권의 문학 작품집으로 본다.
- ③ ‘1장’이란 최소 3곡 이상의 악곡이 포함된 음반을 말하며 ‘음반’은 디지털 음원을 포함한다.
- ④ ‘1회’란 전시의 경우 일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진 동일한 내용의 전시를 말한다.
- ⑤ 동일명칭의 공연이라도 최소 6개월의 시차가 있을 경우 다른 작품으로 볼 수 있다.
- ⑥ 연극의 경우 동일한 작품이라도 12주 이상 연속하여 총 36회 이상 출연하면 “3년 동안 3편”의 하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8주 이상 연속하여 총 24회 이상 출연하면 “3년 동안 2편”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 ⑦ 연예 분야 가목의 경우 16회 이상 고정 출연하면 “3년 동안 3편 이상”의 하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⑧ 공동 창작의 경우 N분의 1 배점을 원칙으로 하며 주와 부는 인정하지 않는다.
- 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제3조 제5의2호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제38조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를 발령하여 예정된 발표, 전기, 공연 등의 예술활동이 취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예술활동은 기준 실적 산정 범위 내에 포함한다. 단, 예술인은 재난으로 인하여 예술활동이 취소되었다는 사실 및 해당 예술활동에 참여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발표 매체의 기준)

- ① ‘문예지 등’, ‘관련 잡지 등’이란 서적, 웹진 등으로 서적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여받은 경우에 한한다.
- ② ‘관련 매체’란 ‘관련 잡지 등’을 포함하여 과학 기술의 발달과 함께 나타나는 첨단 매체들을 폭넓게 포함한다. 다만 블로그 등의 개인매체는 인정하지 않는다.

· 제16조(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의 기준)

- ①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이란 ‘스태프(제작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창조력과 숙련도를 전제로 하며 행위의 결과가 저작물의 일부로 포함되거나 저작물 공표에 반영되어 의미 표출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는 경우를 망라한다.
- ② ‘상당한 정도’란 그것을 제외할 경우 작품에 적지 않은 손상이 갈 수 있고 또한 쉬운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 지시에 의한 단순 제작이나 단순 운반, 단순 조작, 단순 진행, 행정지원 등 분명 필요하지만 창조력 발휘나 예술적 기여의 정도가 미미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③ ‘스태프(제작진)’란 원래 연극, 영화, 방송 등에서 실연자 외에 제작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을 뜻하나 그 범위를 모든 공연, 영상, 전시 분야까지 확대하여 공연, 영상 분야의 실연자와 미술, 사진, 건축, 만화 분야의 창작자를 제외한 참여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스태프 중 별표에 별도로 기준이 명시된 경우는 각 분야별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⑤ 기술지원 인력의 활동 분야는 전시(미술, 사진, 건축, 만화), 공연(음악, 국악, 무용, 연극, 연예), 영상(영화, 연예), 만화 제작 분야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⑥ 미술, 사진, 건축 분야 전시 기획 인력 중 ‘예술감독 등 기획자’란 전시를 주도적으로 총괄, 기획하는 사람으로서 일반 기획 인력과 구분한다.

· 제17조(문학 분야 인정기준)

- ① ‘문학’은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 또는 그런 작품을 뜻한다.
- ② 문학 분야 범주로는 시(동시), 시조, 소설(동화, 청소년), 희곡, 수필, 평론, 평전 등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 번역 등이 있다.
- ③ 아동문학(동시, 동화)과 청소년문학의 경우 등단여부(신춘문예, 각종 문예지 신인상, 각종 아동문학상)와 순수 창작 저술 활동(출판, 발표)이 추가 되고 교양·교육도서의 저술활동이 그에 못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 결정하되, 교양·교육도서 기획출판 중에도 작가의 창의성이 포함된 도서는 순수 창작 활동으로 본다.(위인전, 명작 재구성, 학습도서는 제외한다)
- ④ ‘문예지 등’은 3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문학 월간지 또는 5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격월간·계간·반연간 종합 문예지 및 장르별 문예지, 3년 이상 된 일간지 및 30년 이상 된 문학전문 주간지, 지속적·주기적으로 문학 작품을 게재하는 3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월간지 또는 5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격월간·계간·반연간 잡지 등을 말한다.
- ⑤ 공동 문학 작품집은 문예지 등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18조(미술, 사진, 건축 분야 인정기준)

- ① ‘미술’은 공간 및 시각의 미를 표현하는 예술로 공간 예술, 조형 예술 등으로 부르기도 하며, ‘응용미술’은 실제적인 효용에 목적을 둔 미술로 도안, 장식 따위가 있다.
- ② 미술 분야 범주로는 그림, 판화, 조각, 공예, 서예, 디자인, 미디어아트, 설치미술, 프랙탈 아트, 행위예술 등의 세부 장르와 미술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 비평, 기술지원(조명, 음향, 장치, 도구 등), 기획 등이 있다.
- ③ 공공미술은 전시회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④ ‘사진’은 빛의 작용으로 사물의 형상을 감광판(필름, 센서)에 각인시켜 보존하는 이미지를 뜻하며, 널리 사실의 기록과 증명의 수단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에서도 폭넓게 활용되는 한편 사진가의 생각과 감성을 표현하는 창작수단이기도 하다.
- ⑤ 사진 분야의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 비평, 기술지원(조명, 음향, 장치, 도구 등), 기획 등이 있다.
- ⑥ ‘건축’은 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실제적인 요구와 표현 욕구를 충족시키는 건물을 설계하고 짓는 예술 또는 그 기술을 뜻한다.

예술활동 증명 운영 지침

- ⑦ 건축 분야의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또는 설계), 비평, 기술지원(조명, 음향, 장치, 도구 등), 기획 등이 있다.
- ⑧ 건축의 경우 원칙적으로 설계는 예술활동으로 인정하고 시공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전통건축의 경우 설계와 시공을 구분하지 않고 예술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9조(음악, 국악 분야 인정기준)

- ① ‘음악’은 박자, 가락, 음성 따위를 갖가지 형식으로 조화하고 결합하여 목소리나 악기를 통하여 사상 또는 감정을 나타내는 예술이며, ‘국악’은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으로 서양 음악에 상대하여 우리의 전통 음악을 이르는 말이다.
- ② 음악, 국악 분야 범주로는 성악과 기악이 각각 또는 함께 이루는 여러 세부 장르들과 음악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가창, 연주, 지휘, 작사, 작곡, 편곡, 비평, 기술지원(연출, 안무, 조연출,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트루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작창,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녹음, 믹싱, 마스터링 등), 기획 등이 있다.
- ③ 음악은 고전음악, 현대음악, 퓨전음악, 대중음악, 동요 등을 포함하며, 오페라는 연극 중 음악극의 한 종류로 간주할 수도 있다.
- ④ 국악은 전통연희, 전통무용 등과 융합 공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전통연희나 전통무용은 연극, 무용 분야와 병합 가능하며, 창극(국극)의 경우 연극 중 음악극의 한 종류로 간주할 수도 있다.
- ⑤ 오페라, 창극(국극)의 연출은 음악, 국악 공연의 일반 기술지원 인력과 달리 연극 분야의 연출과 동일한 직종으로 본다.
- ⑥ 대중음악의 경우 재즈클럽, 라이브 카페 등 다양한 장소에서의 공연이 가능한데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된 경우는 인정하나 유흥업소로 분류된 스탠드바, 밤무대 공연 등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⑦ 경연대회(콩쿠르), 봉사활동, 축제, 행사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공연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⑧ 길거리 밴드나 직장 동아리 밴드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⑨ 반주 음악(MR)은 1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0조(무용 분야 인정기준)

- ① ‘무용’은 음악에 맞추어 율동적인 동작으로 감정과 의지를 표현하는 예술이다.
- ② 무용 분야 범주로는 한국무용(전통, 창작), 발레(전통, 창작), 현대무용, 실용무용 등의 세부 장르와 무용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연기, 안무, 비평, 기술지원(연출, 조연출,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트루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음악,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작창,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등), 기획 등이 있다.
- ③ 경연대회(콩쿠르), 봉사활동, 축제, 행사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공연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경연이나 축제의 성격이 있으나 참여 자체가 일정 수준을 전제로 초청받아야 가능한 경우는 인정할 수 있다.

제21조(연극 분야 인정기준)

- ① ‘연극’은 배우가 각본에 따라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말과 동작으로 관객에게 보여 주는 무대 예술이다.
- ② 연극 분야 범주로는 대사극, 음악극(오페라, 창극(국극), 뮤지컬), 무용극, 마당극, 거리극, 마임, 행위 예술, 전통연희(판소리, 가면극, 인형극, 그림자극), 아동·청소년극, 교육연극 등의 세부 장르와 연극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연기, 연출, 극작, 비평, 기술지원(조연출, 안무,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트루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음악,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작창,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등), 기획 등이 있다.

- ③ 학생 공연 참여나 지도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④ 작품 개발 차원의 낭독 공연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⑤ 교육연극의 경우 무대공연을 목적으로 하되 해당 공연이 일정 정도의 예술적 성취를 이룬 경우에만 인정한다.

제22조(영화 분야 인정기준)

- ① ‘영화’는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 ② 영화 분야 범주로는 극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 등의 세부 장르와 영화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연기, 연출, 시나리오, 비평, 기술지원(조연출, 프로듀서, 예술감독,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촬영, 녹음, 편집, 장치, 조명, 음향, 음악, 도구, 분장, 의상 등), 기획 등이 있다.
- ③ 인력회사를 통해 참여하는 보조출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④ 학생 작품 참여나 지도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⑤ 학교 영화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3조(연예 분야 인정기준)

- ① ‘연예’는 대중적인 연기, 노래, 춤, 만담, 마술, 곡예 따위를 관중 앞에서 공연하는 것을 뜻한다.
- ② 연예 분야 범주로는 드라마, 예능 · 교양 프로그램, 패션쇼, 광고, 만담, 마술, 곡예 등의 세부 장르와 대중문화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 연기, 연출(방송), 진행, 방송 대본, 대중문화 비평, 영상 기술지원(조연출, 프로듀서, 예술감독,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촬영, 녹음, 편집, 장치, 조명, 음향, 음악, 도구, 분장, 의상 등), 공연 기술지원(연출, 안무, 조연출,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트루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음악,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작창,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등), 기획 등이 있다.
- ③ 패션쇼와 광고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 기준에 따라 출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 ④ 인력회사를 통해 참여하는 보조출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⑤ 경연대회(콩쿠르), 봉사활동, 축제, 행사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공연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4조(만화 분야 인정기준)

- ① ‘만화’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림 또는 그림 및 문자를 통하여 표현한 저작물로서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지거나 디스크, 인터넷 등 디지털매체에 담긴 것으로 관련 매체에 공표된 창작물을 말한다.
- ② 만화 분야 범주로는 캐리커처, 카툰, 스토리만화(교양만화, 학습만화, 홍보만화 등) 등의 세부 장르와 만화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 비평, 제작 기술지원(스토리, 콘티, 펜터치, 데생, 컬러 작업, 배경, 효과, 편집 등), 전시 기술지원(조명, 음향, 장치, 도구 등), 기획 등이 있다.

제25조(소득 기준)

보조금 및 기부금은 해당 예술활동의 완료를 전제로 소득으로 볼 수 있으며 예술인 개인에게 귀속된 액수에 한하여 인정된다.

예술활동 증명 운영 지침

제26조(원로 예술인 인정기준)

- ① ‘원로 예술인’이란 오랜 기간 전문적인 예술활동을 한 만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② 심의위원회는 활동 기간, 경력(언론보도 내용, 수상실적, 주요 행사 초청 경력, 문화예술 관련 공적, 기타 문화예술 관련 공인된 활동 등) 등을 근거로 원로 예술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③ 원로 예술인으로 인정받을 경우 예술활동증명은 종신토록 유효하다.

제27조(경력단절 예술인 인정기준)

- ① ‘경력단절 예술인’이란 전문적인 예술활동을 시작한 이후 기준 기간 이상이 지났으나 질병, 육아, 임신, 출산, 가족 돌봄, 군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준 기간 내 하한 기준 실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며, 경력 단절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증빙이 어려운 경우 경력 단절 사유를 직접 기술하여 예술활동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증빙자료 또는 기술된 경력단절의 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경력단절의 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 ③ 심의위원회는 경력단절의 사유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경력단절 이전 활동에 대하여 예술활동 증명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경력단절의 사유가 이미 해소된 경우 경력단절 이전과 이후의 실적을 합하여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④ 경력단절 기간에 대해서는 예술활동 증명 유효기간 산정을 하지 않는다.
- ⑤ 심의위원회는 판정 시점에서 경력단절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예술인에 대하여서는 이후 경력단절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차기 판정 시점을 정하여야 한다.

제28조(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 인정기준)

- ① ‘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이란 작품 발표 주기가 유난히 길다거나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한 꺼번에 여러 작품을 발표하는 등 작업 방식이 특수한 예술인을 말한다.
- ② 심의위원회는 신청자의 예술활동 실적을 근거로 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③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은 해당 분야의 기준을 따른다.

제29조(무형문화재 관련 특례)

- ① 심의위원회는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의 확인을 근거로 예술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의 범주로 볼 수 있는 종목에 한한다.
- ② 심의위원회는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무형문화재 이수자의 경우 봉사활동, 축제, 행사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공연도 예술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의 범주로 볼 수 있는 종목에 한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예술인으로 인정받을 경우 그 자격이 유지되는 한 예술활동 증명은 지속적으로 유효하다.

제30조(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 ① 심의위원회는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기 위해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를 근거로 산재보험 가입 지원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 ②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관련 특례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 ① 심의위원회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 보험료 납부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 ②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2조(불공정행위 관련 특례)

-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 ② 불공정행위 관련 특례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3조(여러 분야 또는 목 간 복합 실적에 대한 인정기준)

- ① 여러 분야 또는 여러 목의 활동으로 분산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술적 역량이 서로 연계되어 발휘된다고 판단될 경우 합산하여 예술활동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예술활동증명을 위한 하한 기준을 1점으로 보고 환산, 합산하여 1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제5장 효력

제34조(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신청)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사람은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자격 유지를 위한 재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재신청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예술활동증명의 효력은 상실된다.

제35조(허위자료 제출 시 효력)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의 예술활동증명은 무효이며 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재단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